○ 양 천 구　의 회
○ 제282회 정 례 회

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
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　토　보　고　서

2020. 12. 14.

의회운영위원회

의 안 검 토 보 고

의안번호	제2543호	검토	전문위원 이주현
의안명	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발의자	박종호 의원 (찬성 9명)	발의일자	2020. 11. 13.
소관위원회	의회운영위원회	회부일자	2020. 11. 19.

1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, 제34조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2021년도 월정수당을 「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」에 반영하고자 함.

2 주요내용

○ 월정수당을 월 2,799,250원으로 함 (안 별표2).

3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 및 제34조

나. 예산조치 : 2021년 예산안 편성.

다. 관련부서 검토의견 : 없음.

라. 기타

1) 개정안 : 별 첨

2) 입법예고 : 2020. 11. 20. ~ 2020. 11. 24.

4 검토의견

□ **조례 개정 취지 및 배경**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18.11.14. 개최된 <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>에서 심의·결정한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
- <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>에서는 상위법령 및 행정안전부 지침(2018.11.12.)에 따라 **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의정비를 결정**하도록 의결함.
- 이에 **2021년도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월정수당은** 현행 월정수당 월 272만 3,010원에 **2020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2.8%를**

반영한 월 279만 9,250원으로 결정함.

○ 따라서, 2021년도 의정비는 월정수당 279만 9,250원과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을 합한 월 389만 9,250원(연 4,679만 1,000원)이며, **2020년도 대비 월 7만 6,240원이 인상**된 것에 해당됨.

□ 법적 근거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음.

□ 종합 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**행정안전부 지침의 범위에서 의정활동비를 소폭 인상한 것으로 타당**하다고 봄.

【표 1】2021년도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비

(단위 : 원/월)

구분	2020년 의정비	2020년 공무원 보수인상률	2021년 의정비	증감
계	3,823,010 (연 45,876,120)	-	3,899,250 (연 46,791,000)	76,240 (연 1,004,880)
월정수당	2,723,010 (연 32,676,120)	2.8%	2,799,250 (연 32,676,120)	76,240 (연 1,004,880)
의정활동비	1,100,000 (연 13,200,000)	정액	1,100,000 (연 13,200,000)	0

【붙임 1】 관련 법령

「지방자치법」

제33조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.

1.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(補塡)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

2. 본회의 의결,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

3.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

② **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**

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제33조(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)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

1. 의정활동비: 별표 4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 및 제34조에서 "심의회"라 한다)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

2. 여비: 별표 5에 따른 여비 지급범위에서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

3. **월정수당: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,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, 재정 능력,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,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**

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

지급일에 지급한다.

제34조(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심의회는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교육계·법조계·언론계·시민사회단체, 통·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자로 한다. 다만, 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와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·의회의원·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·직계존비속·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.

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⑤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**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다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제33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고, 그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,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적용**한다. 이 경우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심의회는 제5항의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,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 다만, **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**

⑦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5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.

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의 위원명단, 회의록 및 제5항 전단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.

⑨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⑩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